

부양가족 공제 시 확인 사항

- ◆ **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500만원**,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(비과세소득 제외) 3,333,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
 - ※ 일용근로소득만 있는(금액 크기 관계없음)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(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)
- ◆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
- ◆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
 - ※ 공적연금 관련법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
 - ※ '06년 ~ '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
- ◆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
- ◆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
- ◆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(비과세소득 제외)이 연 5,166,666원(연금소득금액 100만원) 초과하거나, 사적연금소득(연금저축·퇴직연금 등)의 총 연금액이 연 1,200만원 초과(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)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
- ◆ 금융소득 2,000만원을 초과시 불가
- ◆ **근로소득·사업소득·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)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불가**
- * 직계비속은 1996.1.1.이후 출생자 (만 20세이하) * 직계존속은 1956.12.31.이전 (만 60세이상)
- * 경로우대자 1946.12.31.이전.(만70세) * 6세이하 2010.1.1 이후

1. 부양가족 중복공제

-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
-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
 - (1순위)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
 - (2순위)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(공제신청자)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(소령 §106②)
 1.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
 2. 다만,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

2.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

2015.12.31. 이전에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

3.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

-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불가
-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(세대원 포함)는 주택마련저축 공제 불가
-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
 - => 무주택확인서 : 청약저축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가능

4. 보험료 과다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(피보험자)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불가

5. 신용카드 과다공제

- 형제자매(기본공제대상자 포함)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
-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
-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

6.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

-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('13.12.31. 이전 3억원)을 초과한 주택('13.12.31. 이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)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
- 과세기간 종료일(12.31.)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
-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
-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
 -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으나,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
- 2주택 여부 판단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함
- 세대원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 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

7. 연금저축 과다공제

- 개인연금저축(납입금액의 40% 공제, 72만원 한도)을 연금저축(납입금액의 100% 공제, 400만원 한도)으로 착오 기재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
-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불가 /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경우 불가

8. 의료비 과다공제

-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 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
 - 보험회사에서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·단체보험 등 실손 보험금으로 수령시 그 금액 제외하고 세액공제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
 -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*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(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)
-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(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) 불가

9. 교육비 과다공제

-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 -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가능
-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/
 - 초등학교 입학연도 1월~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
-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과 (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)학자금등을 국가 회사에서 지원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

10. 기부금 과다공제

-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·비속 및 형제자매 등(소득이 없고, 같이 사는 경우)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2016.1.1.일부터 가능
-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

11. 대학생 자녀인데 소득금액 없을시 공제 가능한 항목

교육비 / 의료비/ 신용카드 /기부금 (2016.1.1.부터 가능)

12. 중도 입사자중 종전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 첨부

13. 중도입사자 중 종전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 기간에만 해당하는 신용카드등 사용액 , 의료비, 보험료는 국세청 연말정산프로그램에서 월별로 해당하는 기간만 뽑아서 pdf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세요

연말정산 서류는 국세청연말정산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변환한 후, 비밀번호 하지 말고 파일형태로 보내주세요

구 분	중점 확인사항
인적공제	-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확인 -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(1.1) 전 사망자·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
주택자금공제	- 거주자(개인)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- 주인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 확인 -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인 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- 주인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 확인 - 등기부등본,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, 국민주택 규모 여부(2013년 이전 차입분),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, 대출 계약기간이 15년(10년) 이상인지 여부,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(2013.12.31. 이전 3억원) 여부,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, 대출조건(비거치식, 고정금리 등) 확인
주택마련저축공제	- 주인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-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
신용카드소득공제	-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-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)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
연금계좌세액공제	-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-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(공제불가) 또는 본인명의 확인
보험료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
의료비세액공제	-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함 - 근로자 명의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였는지 확인 - 사내근로복지기금·보험회사(실손보험금)·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(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 공제 불가)
교육비세액공제	-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(입학연도 1월~2월 까지)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-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-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근로자가 교육비 공제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-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(과세제외)를 제외하였는지 확인
기부금세액공제	-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‘일련번호’ 유무 확인 -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불인정 경우 있음 -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- 기부금영수증, 법인설립허가증 사본, 소속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‘고유번호증’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
월세액세액공제	- 주인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(세대원 가능) 여부 확인 -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- 주인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※ 2014.1.1. 이후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